



제336회 정례회

2014.11.25.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4년 11월 04일
- 회부일자: 2014년 11월 06일

3. 제안이유

제16대 교육감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추진을 보좌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교육감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을 배치하고자 별표를 개정함

- 1) 별정직·정무직 책정기준 조정: 0.1% 이내 → 0.2% 이내(안 별표 1)
- 2)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마련(안 별표 2)
- 3) 일반직 5급 이하 총정원 $\Delta 3$ →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총정원 +3(안 별표 3)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대 민선 교육감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추진을 보다 더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 3명(5급상당 2명, 6급 상당 1명)을 배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안 별표 1의 별정직·정무직 책정 기준을 현행 0.1%(최대 2명 가능)에서 0.2%(최대 5명 가능)로 늘리고, 별정직 정원 3명은 일반직 5급 이하 총정원에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5급 상

당이상 70%이내(최대 3명 가능) 6급 상당이하 30%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 타 시·도 교육청의 별정직 정원을 살펴보면, 10개 교육청 평균이 0.31%이며, 최소 0.1%에서 최대 1%까지의 정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정무직을 포함한 별정직 정원 평균 비율이 1.1%에 달하고 있는 바, 도교육청이 이번에 책정하려는 별정직 정원 0.2%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타 시·도 교육청의 별정직 직급별 정원 분포비율을 살펴 본 바, 별표1)과 같이 5급 상당이 37.5%, 6급 상당 이하가 62.5%로 하위 직급의 비율이 높는데 반해, 도교육청은 5급 상당 이상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어 비서실에 5급 상당 별정직 2명을 배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별표1) 타시도 교육청 별정직 정원 직급별 책정 현황

(기준일: 2014.10.6.)

지역	직렬	5급 상당	6급 당당	7급 상당	8·9급 상당	합계	책정기준
부산	비서		2			2	6급(100%)
인천	비서	1	1			2	5급(50%)/6급(50%)
광주	비서	1	1			2	5급(50%)/6급(50%)
세종	비서			1		1	7급(100%)
경기	비서	1	1			2	5급(50%)/6급(50%)
강원	비서	3	1			4	5급(50%)/6급(50%)
충남	비서		1			1	6급(100%)
전북	비서	1	1	1	1	4	5급~8급(25%균분)
경남	비서	1	2			3	5급(34%)/6급(66%)
제주	비서	1	1	1		3	5급(40%)/6~7급(60%)
인원계		9	11	3	1	24	
비율(%)		37.5	45.8	12.5	4.2	100	

관 계 법 령 발 체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4.4.8.] [법률 제12213호, 2014.1.7., 일부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6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

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2조(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지방자치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